

2019. 9. 4. ~ 9. 9./6일간

#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원안가결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주요내용

### 1.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형행 조례 제3조제4항에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항)

- (현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장성군의회 의원

5. 중소기업 대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3조제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 서	출연 기관	2019년 출연금	사업 내용	관련 법령
총무과	장성장학회	12,206	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및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장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법률명 및 용어 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 “평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9조~제12조)
- 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변경 규정(안 제13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 서	출연 기관	2019년 출연금	사업 내용	관련 법령
재무과	장성장학회	22,453	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과 실버복지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1)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99-6 외 3필지
- 2) 사업규모 : 건축면적 661㎡(부지 1,432㎡) / 지상2층
- 3) 예상사업비 : 2,000백만원 (공사비)

※ 신축부지 : 1,052백만원(주차장 조성부지 활용 - 교통정책과 2018.08.매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 안 자** : 장성군수(교통정책과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장애 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 (현행) 1급 또는 2급 장애인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 안 자** : 장성군수(교통정책과장)

▪ 제안이유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량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부적정 운용을 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일자 : 2019. 8. 27.

▪ 제안자 : 장성군수

▪ 편성개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재원 확보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정책,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예산규모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447,292	430,714	16,578	3.85%	
일반회계	435,374	419,637	15,737	3.75%	
특별회계	11,918	11,077	841	7.59%	
의료급여사업	1,162	1,080	82	7.59%	
공공실버주택	1,212	1,236	△24	△1.99%	
건축진흥	576	400	176	44.08%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501	478	23	4.94%	
주차장 운영	603	719	△116	△16.18%	
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	124	119	4	4.02%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70	67	3	4.74%	
드림빌	1,951	1,955	△3	△0.17%	
주민소득지원 기금	1,436	1,436	0	0.00%	
상수도사업	4,282	3,587	694	19.37%	

▪ 의결결과 : 수정가결